

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소요경비의 징수) ①구청장은 보호조치증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의 회원	②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부 칙											
제 5 조(임무)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보호동물이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6 조(해촉) 구청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별표 1]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 9 조 및 제 10 조 제 1 항 관련)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1. 사료급여 기준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table border="1"> <thead> <tr> <th>동물명</th> <th>규격</th> <th>사료급여량(1마리/1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td> <td>10kg이하</td> <td>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td> </tr> <tr> <td>10kg초과</td> <td>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td> </tr> <tr> <td>고양이</td> <td>-</td> <td>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td> </tr> </tbody> </table>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량(1마리/1일)	개	10kg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kg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량(1마리/1일)										
개	10kg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kg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제 7 조(위탁보호) ①구청장은 관리인을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비고: ①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③제 5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④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6 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관리인에 대한 수당											
제 8 조(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한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9 조(소요경비 지급) ①구청자는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공수의의 진료비, 위탁보호수수료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5. 치료비

수의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 6. 수송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가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표를 적용한다.

○委員長 白昌鉉 다음은 그러면 李基烈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烈委員 李基烈委員입니다. 都市ガス普及擴大政策은 이야기를 드렸고 또 質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計劃도 實施을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實施時期가 언제쯤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工事費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確定이 되면 저희 委員들한테 우편으로라도 한 장씩 우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一覽表입니다.

○產業經濟局長 金東勳 實施는 3月 10日 이전에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工事費 관계는 委員님들께 서신으로 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李基烈委員 네,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昌鉉 散會를 하기 전에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肉類需給計劃에 있어서 탄력있는 行政을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요즈음 들어보면 홀스타인輸入이 우유供給을 增大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홀스타인을 들여온다는 데 들여오는 소는 우량하겠지만, 肉類供給에 대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國內에 있는 상당한 홀스타인이 肉牛로 대처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요즘 돼지고기 폭락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弹力있는 行政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都市ガ스問題는 그

렇습니다. 상당한 金額을 우리 委員님들이 다 이왕이면 우리 市民들한테 融資가 되어야 되는데 業者한테 融資되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市議會가 組織되기 전에 業者 편의에 의해서 施設을 하고 融資를 하였고 施設을 했지만 이제 우리 市議會가構成된 이후에는庶民을 위한 融資를 한다고 그러면 高地帶의 연탄때는 데를 배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制度를 改善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融資金이 나가고 支援金이고, 거기에는 안됩니다만 市議會가構成되었으면 연탄때는 데가 都市ガス가 들어가더라 이런 것을 市民들이 기대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기 바라고 이런 行政에 대한 뒷받침이施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產業經濟局長님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議事日程은 전부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権 3打)

(12時 30分 散會)

## ○出席委員

白昌鉉	崔浩	李基烈
桂承澤	李元局	申尙澈
金成奐	李永輔	權赫柱
丁鎮	申龍吉	金昌學

## ○専門委員

成泰辰

## ○出席公務員

產業經濟局

局長	金東勳
商工課長	李重吉
燃料課長	金在宗
ガス課長	金致經
農畜課長	崔熙周
糧政課長	李來相
消費者保護課長	文忠實
農村指導所長	李相夏